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- 1. 발 의 자: 정지원 의원
- 2. 찬 성 자: 김낙관 의원 외 8인
- 3. 제안이유
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,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- 4. 주요내용
 - O 지원범위 및 대상(안 제24조제2항)
- 5. 참고사항
 - O 관계법령
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34조 및 제85조제1항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•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의 범위(지하층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시설 설치 등 신설) 및 대상(사용검사일부터 20년→10년이 경과된 경우)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단지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지하층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※ 참고자료

○ 공동주택 현황(2024. 12. 31. 기준)

(출처: 주택과)

구 분		단지수	세대수	동 수	비고
총 계		310	115,793	1,423	
의무단지 구분	의 무1)	171	104,809	1,188	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
	비의무	139	10,984	235	
경과년수 구분	10년 미만	50	34,319	413	
	10년이상 ~20년 미만	48	23,662	292	
	20년 이상 30년 미만	98	35,623	365	
	30년 이상	114	22,189	353	

- 나.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
- 다.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 포함)의 공동주택
- 라.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(주상복합 건물)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
-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

^{1) 「}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

^{2. &}quot;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"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,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.

가.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